

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94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. 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정이유

- 안산시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대표 및 근로자에게 수여하는 안산시중소기업대상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본 상의 내실과 권위를 제고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가. 중소기업대상의 시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·소기업의 대표자, 근로자로 함 (안 제2조).
- 나. 중소기업대상의 시상부문은 기업경영, 공업발전, 노사화합, 장인계승 부문으로하고, 시상인원은 매년 기업경영, 공업발전, 장인계승 부문은 각1명, 노사화합부문은 노·사 각1명으로 함 (안 제3조).
- 다.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안산시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함 (안 제6조).
- 라. 수상자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근거로 심사·선정함 (안 제8조).
- 마. 중소기업대상은 매년 안산시민의 날 행사시 시상하며, 부상은 수상자별 순금메달(75그램)로 함 (안 제9조, 제10조).

제정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 발췌서 : 별첨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,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시상금 500만원(년)

사전(입법)예고 : 2000. 11. 15 ~ 12. 4(20일)

-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기타 참고사항

- 경기도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

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산시중소기업대상(이하 “중소기업대상”이라 한다)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중소기업”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

제3조 (시상부문과 인원) ①중소기업대상의 시상부문과 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업경영부문(기업대표자) 1명
2. 공업발전부문(근로자) 1명
3. 노사화합부문(기업대표자, 근로자) 각1명
4. 장인계승부문(근로자) 1명

②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조 (수상후보자의 자격) ①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업대표자 : 시상일 현재 시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, 3년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기업 대표경력 3년이상인 자
2. 근로자 : 시상일 현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재직중인 상시 근로자

②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 (수상후보자의 추천) ①수상후보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본부장, 안산상공회의소회장,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이사장, 반월도금공업협동조합이사장, 한국노총경기도본부안산지역지부의장,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본부안산지구 협의회의장이 추천을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 대표가 직접 추천할 수 있다.

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6조 (공적심사위원회) ①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대상공적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④위원은 시의회의원, 학계, 중소기업관련기관(단체), 기업인, 근로자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기업지원센터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
⑤위원은 매년 위촉하고, 그 해의 공적심사가 종료됨으로써 당연 해촉된다.

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,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되고, 서기는 경영지원담당이 된다.

제7조 (회의) ①위원회는 시장이 서면으로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 (공적심사 및 수상자의 선정) ①공적심사 및 수상자 선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사·선정한다.

②공적심사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및 심사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.

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실사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9조 (시상시기) 중소기업대상은 매년 안산시민의 날 행사시 시상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0조 (시상방법 및 부상) 시상은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, 부상은 수상자별 순금메달(75그램)로 한다.

제11조 (실비변상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 (관계규정의 준용) 중소기업대상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포상조례를 준용한다.

부 칙

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시상된 안산시기업발전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상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기업지원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과장 이 대 직
	담당 직위·성명	경영지원담당 최 종 재
	담당자 성명·전화	최 미 라 (행정 2843)